

1. 개정이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과 국방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무관에 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 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다만, 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및 국방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과 국방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무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다만, 무관은 원소속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